

KOLAS 공인시험기관 정지 공고

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(시험·검사기관 인정 등)와 「KOLAS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」 제29조(인정 취소 등)의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정지를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03일

한 국 인 정 기 구 장

1. 공고대상기관

인정 번호	기 관 명	법인등록 번호	사업장소재지	유효기간	정지 분야 및 기간
KT809	(재)포항금속 소재산업진흥원	171722 -0003602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40	2018-09-21 ~ 2022-09-20	전 분야 3개월 인정정지 (2020.11.03. ~ 2021.02.02.)

2. 공고방법 : KOLAS 홈페이지(www.knab.go.kr/kolas)

부칙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